

【논문】

‘이순신 장군’은 고유명인가 기술구인가?*

최성호**

【주제분류】 분석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스콧 썬즈, 고유명,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 기술적 의미, 구문론적 단순체

【요약문】 본 논문은 스콧 썬즈가 그의 책 『고정성을 넘어서 *Beyond Rigidity*』에서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예를 들어, ‘정인교 교수’, ‘이순신 장군’, ‘경상북도 상주시’, ‘이화여자대학교’ 등)이라고 부른 표현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름, 즉, 고유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그 질문에 대한 스콧 썬즈 자신의 답변은 다소 혼란스럽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필자는 그가 가장 최근에 제시한 답변을 적절히 해석하면 그것이 고유명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을 썬즈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이라고 부르는 표현들 이외에 우리가 이름으로 간주하는 다른 표현들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다고 논변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가 고유명을 우리 언어의 다른 유의미한 언어적 표현들로부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하여 여러 조언을 해 준 전승현 군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을 꼼꼼히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 경희대 철학과

I. 스콧 쏘즈(Scott Soames)의 『고정성을 넘어서 *Beyond Rigidity*』

쏘즈의 저서 『고정성을 넘어서 *Beyond Rigidity*』는 크립키가 그의 저서 『이름과 필연 *Naming and Necessity*』에서 미완으로 남겨둔 이름과 자연종 명사에 대한 직접 지시 이론(direct reference theory)¹⁾을 한층 완결된 형태로 완성하려는 시도이다. 쏘즈(2002, 1장)는 먼저 단순한 형태론적 구조를 갖는 고유명(e.g., ‘금성’, ‘셋별’, ‘이광수’, ‘아리스토텔레스’, ‘피델’)²⁾에 대한 크립키의 직접 지시 이론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들이 나타나는 문장에서 그들이 갖는 의미론적 기여는 오로지 그들의 지시체일 뿐이라는 밀주의(Millianism)를 옹호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단순 고유명이 그 표준적인 사용에서 어떤 기술적 내용(descriptive content)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즉 비고정적 기술구(non-rigid description)나 혹은 고정화된 기술구(rigidified description)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³⁾ 하지만 쏘즈는 이러

-
- 1) 학계에서 ‘직접 지시 이론’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는 본 논문에서 ‘직접 지시 이론’을 데빗(M. Devitt)과 스테렌리(K. Sterenley)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어떤 표현이 직접 지시적이라는(directly referential) 말은 그것이 프레게식의 기술적 의미(Fregean descriptive sense)를 매개하지 않고 지시하고, 따라서 고정지시어(rigid designator)라는 것을 뜻한다(Devitt and Sterenley 1988, p. 77).
 - 2) 고유명(proper names)은 고유 명사(proper nouns)와 구분되어야 한다. 커밍(Sam Cumming)이 지적하듯, 고유 명사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한 종류인 반면 고유명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이순신’, ‘Aristotle’, ‘Kripke’, ‘서울’ 등은 고유 명사이면서 동시에 고유명이다. 하지만, 고유명은 반드시 한 단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모든 고유명이 고유 명사라는 보장은 없다. 고유명은 ‘한국 분석 철학회’, ‘온누리 약국’, ‘회기동에서 제일 맛있는 족발집’ 등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형태론적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명을 어떻게 다른 언어적 표현과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박재연(2008; 2012), 이홍식(2016), 그리고 Andersen(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크립키 자신은, 그의 『이름과 필연』에서 이름에 대한 기술주의(descriptivism), 즉, 이름이 어떤 적절한 기술구 혹은 기술구들의 다발(cluster)과 동의어라는 입장에 대한 막강한 비판을 제기하지만,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명시적으로 개진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름의 의미에 대한 밀주의가 기술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크립키의 입장은 밀주의에 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직접 지시 이론의 핵심 논제가 복합 고유명, 혹은 그의 표현을 빌면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partially descriptive name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썬즈는 그들은 분명 고유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일부분 기술적 내용을 갖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직접 지시 이론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썬즈(2002, 5장)가 그의 저서에서 제시하는 부분적으로 기술적 이름의 사례들은 ‘Professor Saul Kripke’, ‘Princeton University’, ‘Princess Diana’, ‘Mr. Terry Thomas’, ‘Trenton New Jersey’, ‘Mount Rainier’, ‘The Empire State Building’ 등이다. 한국어에서는 ‘정인교 교수’, ‘이순신 장군’, ‘전두환 대통령’, ‘성철 스님’, ‘이화여자대학교’, ‘경상북도 상주시’ 등이 썬즈의 부분적으로 기술적 이름에 해당할 것이다. 썬즈는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논제를 옹호한다.

- SS1. 모든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은 고유명이다.
- SS2. 모든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들에 대하여 단일한 의미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 SS3. 그 의미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부분적으로 기술적 이름 n 은 어떤 기술적 속성 PD, 그리고 지시체 o 에 의미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지시체 o 는 일부는 속성 PD를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일부는 일반적인 비기술적 이름들의 지시를 결정하는 비기술적 메커니즘 – 예를 들어서 o 에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름 전달의 역사적 연쇄(historical chain of transmission leading back to o)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n 의 의미론적 내용은 o 와 PD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 n is F ’라는 문장은 ‘ y ’라는 변항에 대상 o 가 할당된 상황에서 ‘[the x : $Dx \ \& \ x=y \ Fx$]⁴⁾’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문장은 대상 o 가 세계 w 에서 D 와 F 가 표현하는 속성들을 가질 때 오직 그 때 세계 w 에서 참이다. 그리고 앞의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를 믿는 것은 대상 o 가 그 두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⁵⁾

4) 이는 스테판 닐(Stephen Neale)이 그의 저서 (Neale 1990)에서 도입한 제한된 양화사(restricted quantifiers)을 통하여 ‘ n is F ’라는 문장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정 기술구(definite description)가 주어로 나타나는 문장 ‘the x such that x is F is G ’을 닐의 제한된 양화사를 사용하여 그 논리적 형식을 분석하면 ‘[the x : x is F](x is G)’가 되고, 그것은 ‘ $\exists x(Fx \ \& \ \forall y(Fy \rightarrow x=y) \ \& \ Gx)$ ’을 의미한다.

SS3을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썸즈는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것의 지시체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이름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 이름의 지시체와 그 이름에 결부된 어떤 기술적 정보(descriptive information)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가령 ‘정인교 교수’의 의미는 ‘정인교’라는 이름의 지시체, 즉 정인교 교수와 함께 그 지시체가 교수라는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서, ‘정인교 교수’의 지시체는 일부는 ‘x가 교수이다’라는 기술적 내용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일부는 ‘정인교’의 지시체가 결정되는 메커니즘, 예를 들어, 이름 사용의 인과적 전달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된다.

본 논문은 위의 세 논제 중에서 SS1에 대한 썸즈의 옹호 논변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고유명과 기술구의 차이에 대한 교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SS1이 참이라는 썸즈의 의견에 동의한다. 썸즈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이라고 부른 것들 모두 고유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의견에 대하여 썸즈가 내놓는 옹호논변은 썸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판단 하에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SS1에 대한 한층 견고한 옹호 논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II. 고유명인가 기술구인가?

썸즈(2002, p. 53)은 그의 책 『고정성을 넘어서』에서 SS1에 대한 정당화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들이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

-
- 5) SS3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partially descriptive name n is semantically associated with both a descriptive property PD and a referent o . The referent o is determined in part by having the property PD and in part by the same nondescriptive mechanisms that determine the reference of ordinary nondescriptive names—for instance, by a historical chain of transmission leading back to o . The semantic content of n includes both o and PD . The proposition expressed by n is F is the same as that expressed by $[\text{the } x: Dx \ \& \ x=y] Fx$, relative to an assignment of o to ‘ y ’. This proposition is true at a world w iff o has the properties expressed by D and F at w . To believe this proposition is to believe of o that it has both properties.’

실을 언급한다.⁶⁾

- NC1. 만약 ‘n’이 대상 o를 지시하는 고유명이라면, 그것은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o가 아닌 다른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
- NC2. 만약 ‘n’과 ‘m’이 고유명이고 ‘n = m’이 참이라면, 다음이 필연적으로 성립한다: 만약 n과 m이 존재하면 n = m이다.
- NC3. 만약 ‘n’이 o를 지시하는 고유명이라면, ‘n is F’라는 문장에 의해서 의미론적으로 표현되는 명제를 믿는다는 것은 대상 o에 대하여 그것이 F라는 술어를 만족한다고 믿는 것이다.⁷⁾

필자는 썬즈의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들이 앞의 세 조건을 만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리고 그 점을 썬즈의 SS3가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인다. 일단 ‘이순신’과 같은 단순 고유명에 대하여 직접 지시 이론을 가정할 때, ‘이순신 장군’은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이순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NC1이 만족된다는 것을 뜻한다.⁸⁾ 또한 현실 세계에서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제독’은 동일한 사람, 즉 이순신을 지시한다. 그런데, ‘이순신’이 고정지시어인 이상,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제독’은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제독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대상, 즉 이순신을 지시한다. 이는 NC2가 만족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SS3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술어 F를 만족한다고 믿는 것은 이순신이라는 대상이 ‘x는 장군이다’는 술어와 함께

6) 썬즈의 2002년도 책에서 NC1, NC2, NC3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간략하고, 또 썬즈가 그들을 고유명에 대한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즈는 분명 그 책에서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이 고유명이라는 논제를 옹호하면서 그 논거로 그들이 NC1, NC2, NC3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NC1, NC2, NC3가 썬즈의 전체 언어철학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듯하다.

7) 이 형식화는 썬즈 자신의 형식화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썬즈는 그 형식화에서 사용/언급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필자는 위의 세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구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8)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은 NC1의 후건을 참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서 NC1은 ‘이순신 장군’이 고유명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이 NC1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NC2와 NC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적용될 것이다.

F를 만족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로부터 ‘이순신 장군’이 NC3를 만족한다는 것이 바로 따라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위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따라서 썬즈의 기준에 의하여 고유명으로 분류된다. ‘이순신 장군’ 이외에 썬즈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으로 분류한 다른 표현들도 NC1, NC2, NC3에 의하여 고유명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썬즈의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이 NC1, NC2, NC3에 의해서 고유명으로 분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순 고유명에 대한 직접 지시 이론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견이 있기 힘들다. 그런데 정작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어떤 표현이 그 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유명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즉, 고유명의 판명 기준으로서 그 세 조건의 지위에 대한 것이다. 이 논점을 명확히 서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지시어에 대한 썬즈의 정의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썬즈는 『고정성을 넘어서』에서 고정지시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유명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썬즈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SS4. 어떤 단칭어(singular term) t 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오직 그 때에 어떤 대상 o 에 대한 고정지시어이다. 단칭어 t 는 o 가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o 를 지시하고, 그리고 t 는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o 가 아닌 다른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⁹⁾

실제로 썬즈는 그의 2003년도 책 『20세기의 철학적 분석 *Philosophical Analysis in the Twentieth Century*』에서 정확히 위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pp. 340-1).¹⁰⁾

-
- 9)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singular term t is a rigid designator of an object o iff t designates o with respect to all possible states of the world (in which o exists); and, moreover, t never designates anything other than o (with respect to any possible-world-state).’
- 10) 썬즈의 정의가 크립키 자신이 제시한 고정지시어의 정의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다. 크립키는 그의 『이름과 필연 *Naming and Necessity*』에서 고정지시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단칭어 t 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 고정지시어이다 (p. 48). 여기서 눈여겨 봐야

일단 고정지시어에 대한 썬즈의 정의를 받아들일 때, 그의 견해에서 ‘이순신 장군’은 엄밀한 말해 고정지시어가 아니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의미가 썬즈의 SS3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그 때, 썬즈 자신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비록 ‘이순신 장군’은 그것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이순신을 지시할 것이지만, 이순신이 조선에서 무관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삶, 가령, 문관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가능세계에서 이순신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장군인 이순신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지시에 실패할 것이다. 만일 그와 같다면, 이순신이 존재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를 지시하지 못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적어도 고정지시어에 대한 썬즈의 정의에서 ‘이순신 장군’은 고정지시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썬즈의 견해에서 비고정지시어 조차도 NC1, NC2, NC3를 만족할 수 있다.¹¹⁾

만일 이와 같다면, 썬즈는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들이 NC1, NC2, NC3을 만족한다는 근거에서 그들을 고유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논변하지만, 그 세 조건이 과연 썬즈가 의도하는 이론적 역할, 즉 고유명을 구분해 내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맥킨지(Michael McKinsey)는 썬즈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

할 점은 고정지시어에 대한 크립키의 이 정의는 위에서 서술한 썬즈의 정의보다 논리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단칭어가 썬즈의 고정지시어이면 그것은 언제나 크립키의 고정지시어가 되지만 후자가 언제나 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t 가 대상 o 를 지시한다고 가정할 때, o 가 존재하지만 t 가 어떤 대상도 지시하지 못하는 가능세계 w 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t 가 w 을 제외한, o 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가능세계에서 o 를 지시한다고 가정할 때 t 는 크립키의 의미에서 고정지시어이지만 썬즈의 의미에서는 고정지시어가 아니다. 본 논문의 주된 주제가 이름에 대한 썬즈의 입장이나만큼 이하에서는 고정지시어에 대한 썬즈의 정의를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핵심 논제는 크립키나 썬즈의 정의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의존하지 않는다.

- 11) 앞서 필자는 고정지시어에 대한 썬즈의 정의가 그에 대한 크립키의 정의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을 포함하여 썬즈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이라고 부르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차이를 예증한다. ‘이순신 장군’은 (그것이 지시에 성공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다는 점에서 크립키의 의미에서 고정지시어이다. 한편 앞서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순신이 존재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시에 실패하는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썬즈의 정의에서 ‘이순신 장군’이 고정지시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름이라고 부른 표현들 중 많은 것들, 특히 ‘경상북도 상주시’와 같이 지명을 연결해서 생성할 수 있는 표현이나 ‘정인교 교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인명 뒤에 타이틀을 붙여서 생성할 수 있는 표현들은 고유명이 아니라 기술구에 가깝다고 논증한다. 먼저 맥킨지 (2005, p. 159)는 ‘경상북도 상주시’라는 표현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상주시’라는 말에 대한 관습적인 축약 표현 (conventional way of saying)이고 후자는 명백히 기술구라는 점에서 전자도 기술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것이 NC1, NC2, NC3을 만족한다 해도 말이다.

인명 뒤에 타이틀을 붙여서 생성된 표현들에 대한 논의는 조금 복잡한데, 맥킨지(2005, pp. 160-161)는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 비록 그들이 기술적 내용을 갖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유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입론을 제시한다. 이런 그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맥킨지가 제시하는 논거는 비록 지금 다이애나는 죽고 따라서 더 이상 왕세자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 왕세자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애나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맥킨지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x는 왕세자비이다’라는 기술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추론한다. 마찬가지로, 맥킨지의 견해에서 비록 전두환은 현재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여전히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전두환을 지시하고,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x가 대통령이다’는 기술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맥킨지는 이렇게 인명 뒤에 타이틀을 붙여서 생성된 표현들이 기술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들이 고유명이 아니라 기술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 지점에서 맥킨지가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실망스럽게도 맥킨지는 그에 대하여 어떤 명확한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맥킨지가 문제의 표현들을 기술구로 간주할 논변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의 입장은 매우 웅색한 것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맥킨지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전두환 대통령’같은 표현들이 어떤 기술적 내용도 없이 그들에 포함된 고유 명사, 즉 ‘다이애나’나 ‘전두환’이 지시하는 것을 언제나 지시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가 어떻게 전자의 표현들이 고유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지 쉽게 납득할 수 없다.¹²⁾ 어떤 표현이 기술적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 고유명과 정확히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그 표현을 고유명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맥킨지의 입장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명 뒤에 타이틀을 붙여서 생성된 표현들이 기술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맥킨지의 논변이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x가 현재 왕세자비이다’라는 기술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전두환 대통령’이 ‘x가 현재 대통령이다’라는 기술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말은 맞다.¹³⁾ 하지만 만약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기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

12) 영어 원문에서 맥킨지는 ‘This kind of fact convinces me that terms formed by prefixing titles to proper names just derivatively refer directly and nondescriptively to whatever the proper names in question refer to’ (p. 161, 필자의 이탤릭)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Another type of expression on which Soames relies as a source of examples of partially descriptive names are terms which are formed by prefixing titles to proper names, terms such as ‘Professor Saul Kripke’. However, once again it is clear that such terms are *not names at all*, though they certainly do contain names.’ (p. 160, 필자의 이탤릭)라고 말한다.

13)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전두환 대통령’의 사례는 어떤 대상을 지시할 목적으로 잘못된 기술구(misdescription)를 사용하는 사례와 다르다. 도넬런(Donnellan 1966)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화자는 잘못된 기술구를 지칭적으로(referentially)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도한 어떤 개체 x에게로 청자의 주의를 향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x에 대한 참된 메시지를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크립키(1980, pp. 84-5)의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발명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 하에서 아인슈타인을 가리킬 목적으로 ‘원자폭탄을 발명한 사람’이라는 기술구를 지칭적으로 사용하고, 페아노가 페아노 공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 하에서 페아노를 가리킬 목적으로 ‘페아노 공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라는 기술구를 지칭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이애나가 더 이상 왕세자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지칭적 용법에 의하여 다이애나를 가리킬 수 있고 전두환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의 지칭적 용법에 의하여 전두환을 가리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전두환 대통령’의 사례는 잘못된 기술구의 사례, 즉 ‘원자폭탄을 발명한 사람’의 사례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아인슈타인을 가리키기 위하여 ‘원자폭탄을 발명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기술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실제로 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아인슈타인을 가리키기 위하여

것은 ‘x가 현재 대통령이다’는 문장이 아니라 ‘x가 현재 대통령이거나 과거 대통령을 역임하였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는 명예로운 지위를 과거에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위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 지위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가리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평가와 태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전두환에 긍정적 평가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전두환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¹⁴⁾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정인교 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점을 전개할 수 있다. 만약 그 용어들이 어떤 기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전자의 경우 그 기술적 의미는 ‘x가 현재 왕세자비이거나 혹은 과거에 왕세자비였다’는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후자의 경우 그것은 ‘x가 현재 교수이거나 혹은 과거에 교수였다’는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다이애나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통하여 그녀를 지시할 수 있고, 정인교 교수가 은퇴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정인교 교수’를 통하여 정인교 교수를 지시할 수 있다.¹⁵⁾

‘원자폭탄을 발명한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가리키기 위하여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사용하고 전두환을 가리키기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을 사용하는 것은 다이애나나 전두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다이애나가 죽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이애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이애나 왕세자비’라는 기술구를 사용하고 전두환이 현재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두환을 가리키기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기술구를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전두환 대통령’의 사례를 잘못된 기술구의 지칭적 용법의 사례로 여기는 것은 오류이다.

- 14)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0년 자신의 모교인 대구상고를 방문했을 때의 경향신문 기사 일부를 발췌해 보자: ‘일부 기수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는 현수막을 앞세워 입장한 뒤, 한꺼번에 운동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현직에 있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15) 필자처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썬즈 역시 필자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맥킨지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고정성을 넘어서』에서 썬즈(pp. 112-3)는 그 비판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자신 나름의 대응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썬즈의 대응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설득력도 떨어졌다. 이에 맥킨지는 한층 명확한 방식으로 그 비판을 다시 제기하는데, 그에 대하여 썬즈(2005, p.177)가 다시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명시적으로 앞서 필자가 서술한 방식으로 맥킨지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명에 타이틀을 붙여서 생성할 수 있는 표현들이 기술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맥킨지의 논증은 실패했다. 분명 이런 결과는 그 표현들이 기술적 의미를 갖는다는 썸즈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표현들이 그렇게 기술적 의미를 갖는다면 왜 그들을 기술구가 아니라 고유명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라는 애초의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Ⅲ. 고유명에 대한 썸즈의 기준

썸즈에 대한 맥킨지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지명을 연결해서 생성할 수 있는 표현이나 혹은 인명 뒤에 타이틀을 붙여 생성할 수 있는 표현들이 그에 결부된 기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입론이, 그 타당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좀 더 엄밀한 검토를 요구하겠지만, 적어도 일견 그럴듯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만약 그 표현들이 그런 기술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왜 그들을 굳이 기술구가 아니라 고유명으로 간주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썸즈는 그들이 NC1, NC2, NC3을 만족하기에 고유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본 절에서 그러한 썸즈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논증할 것이다.

다음의 두 문장을 고려해 보자.

1.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 visited his father's hometown in Keyna.
2.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필자는 위의 두 문장에서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는 고유명이라기보다는 기술구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고유명 앞에 ‘young’, ‘soul-searching’, ‘청년’ 이런 표현들을 첨가함으로써 새로운 고유명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각각의 단

순 고유명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새로운 고유명들을 생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성된 대부분의 고유명들은 실제 사용되지 않거나 설혹 사용된다고 해도 일회적으로만 사용될 뿐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떤 언어에서 개체 x 는 소수의 고유명만을 갖고 그 고유명들이 x 를 지시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나아가 x 와 그것의 고유명 사이의 지시관계는 맥락에 독립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이어서 그러한 고유명의 반복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것이다. 가령 ‘장동건’은 일단 그것이 장동건의 이름으로 최초로 명명된 이후부터는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발화하든 상관없이 장동건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이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발화자에 의하여 ‘장동건’이라는 고유명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를 고유명이 아니라 기술구로 간주하는 것이 고유명에 대한 우리의 상식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고유명에 대한 직접 지시 이론을 가질 때 그들은 모두 썬즈의 세 조건 NC1, NC2, NC3을 만족한다. 먼저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오바마 이외의 다른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 NC1이 만족된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은 현실세계에서 ‘The Hawaii-born Obama’와 같은 대상, 즉 오바마를 지시하고, 나아가,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의 지시체와 ‘The Hawaii-born Obama’의 지시체가 존재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필연적으로 그들은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다. 즉 NC2가 만족된다. 마지막으로 썬즈 입장에서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가 NC3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도 전혀 없어 보인다. (1)을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바마가 케냐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고향에 갔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썬즈의 기준 NC1, NC2, NC3에 따라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가 고유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그것은 고유명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과 배치된다. 동일한 논의를 한국어 표현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를 사용해서도 전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필자는 NC1, NC2, NC3을 만족한다는 근거에서 썬

즈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이라고 부르는 표현들이 고유명이라고 판단한 것은 썬즈의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썬즈(2005, pp. 174-6)는 ‘경상북도 상주시’처럼 두 개 이상의 지명을 연결해서 생성된 표현이나 ‘정인교 교수’처럼 인명과 타이틀을 연결해서 생성된 표현들이 고유명이 아니라는 맥킨지의 비판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가 기존에 제시하였던 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표현들이 고유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논변한다. 그 새로운 근거는 고유명은 문법적인 생성 원리의 산물(an instance of a productive grammatical construction)에 의해서 조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논의를 위하여 다음의 (3a)가 (3b)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3a. Trenton, New Jersey is a small city.

3b. Trenton, which is located in New Jersey, is a small city.

여기서 만약 ‘Trenton, New Jersey’가 어떤 문법적인 용어 생성 규칙에 의해서 ‘Trenton, which is located in New Jersey’로부터 조어되었다면 다음의 (4a)와 (4b)도 동의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썬즈는 말한다.

4a. Trenton, which is located in the Garden State, is a small city.

4b. *Trenton, the Garden State, is a small city.¹⁶⁾

그런데 명백히 (4b)는 상용적인(well-formed) 영어 문장이 아니다. 한국어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다음 두 문장이 동의문이라고 가정하자.

5a. 경상북도 상주시는 꽃감으로 유명하다.

5b. 경상북도에 위치한 상주시는 꽃감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만약 ‘경상북도 상주시’가 어떤 문법적인 생성 규칙에 의해서 ‘경상

16) ‘The Garden State’는 New Jersey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북도에 위치한 상주시'로부터 조어되었다면 다음의 (6a)와 (6b)도 동의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말할 것이다.

- 6a. 영남 북부에 위치한 상주시는 곳감으로 유명하다.
- 6b. *영남 북부 상주시는 곳감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6b)는 상용적인 한국어 문장이 아니다.

짐작하는 인명과 타이틀로 이루어진 표현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지를 이어서 전개한다. 아래의 (7a)는 상용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지만 (7b)는 그렇지 않다.

- 7a. Professor Kripke, Dr. Hagaman, Mr. Kripke.
- 7b. *Teacher Kripke, *Physician. Hagaman, *Mr. the author of *Naming and Necessity*.

한국어 표현에서도 비슷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8a. 정인교 교수, 전두환 대통령, 이순신 장군, 성철 스님
- 8b. *정인교 대학교원, *전두환 국가수반, *충무공 장군, *이영주 스님¹⁷⁾

위에서 ‘Professor’, ‘Doctor’, ‘교수’, ‘대통령’은 각각 ‘Teacher’, ‘Physician’, ‘대학교원’, ‘국가수반’과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고유 명사에 결합할 수 있는 타이틀로 기능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Kripke’, ‘이순신’, ‘성철’은 각각 ‘the author of *Naming and Necessity*’, ‘충무공’, 그리고 ‘이영주’와 동일한 지시체를 갖지만, 전자의 경우 ‘Professor’, ‘장군’, 그리고 ‘스님’이라는 타이틀과 각각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짐작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썩 명확하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상용적’이라는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한

17) ‘이영주’는 성철 스님의 속세명이다.

‘well-formed’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 그것으로 썬즈가 의미하려는 바는 분명 기호논리학에서 어떤 논리식이 논리체계의 구문론적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적형식(well-formed formula)’이라는 표현에서 ‘well-formed’가 의미하는 바와 매우 다른 것이다. 실제로 썬즈는 ‘Trenton, the Garden State’나 (7b)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것들이 문법적인 규칙을 위배한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한다. ‘Trenton, New Jersey’나 (7a)에 나타나는 표현들은 상용적인데 반하여 ‘Trenton, the Garden State’나 (7b)에 나타나는 표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전자는 문법적인데 반하여 후자는 비문법적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썬즈는 ‘well-formed’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뜻한 것인가? 예를 들어, ‘Trenton, New Jersey’과 ‘Professor Kripke’는 잘 형성되었고 ‘Trenton, the Garden States’, ‘Teacher Kripke’는 잘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썬즈가 의미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썬즈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답변은 전자의 표현들은 상용적인데 반하여 후자의 표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Trenton, New Jersey’, ‘Professor Kripke’는 영어 공동체의 화자들이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Trenton, the Garden States’, ‘Teacher Kripke’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well-formed’를 ‘상용적’이라는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하였다.¹⁸⁾ 하지만, 그들 모두 문법적인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전자의 표현과 후자의 표현을 문법적인 규칙을 통하여 구분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썬즈는 전자의 표현들이 그 구성 성분들로부터 문법적인 생성 규칙에

18) 어떤 표현이 상용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언어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나아가 같은 언어사용자에게서도 사용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어떤 특정 언어 사용자의 특정 사용 맥락으로 관심을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을 확정하기 힘든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썬즈의 입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썬즈는 어떤 표현이 상용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하여 고유명과 기술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썬즈는 어떤 표현이 상용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고유명/기술구의 구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가 사용자 상대적, 맥락 의존적인 만큼 후자 역시 사용자 상대적, 맥락 의존적이라고 말이다.

의해서 조어진 것이 아니라고 추론한다. 이어 쏘즈는 그 표현들이 형태론적으로 복잡한지 모르나 구문론적으로는 단순체(syntactically simple)이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고유명이라고 결론짓는다 – 이를 고유명에 대한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라 부르자.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에 대한 쏘즈의 이러한 견해를 필자 개인의 해석을 덧붙여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표현 *n*이 고유명인지 기술구인지는 그것이 문법적 생성 원리를 통해서 조어가 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후자는 *n*에 나타나는 유의미한 언어적 구성 요소를 그 요소와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¹⁹⁾로 교체하여 언제나 상용적인 표현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고유명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문법적인 생성 원리에 의해서 조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영남 북부 상주시’, ‘경상도 북부지역 상주시’와 같은 표현들이 상용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하게 ‘Mr. Kripke’에서 ‘Kripke’를 ‘Saul’이나 ‘the author of *Naming and Necessity*’로 교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Mr. Saul’이나 ‘Mr. the author of *Naming and Necessity*’가 상용적이지 않고, 그것은 ‘Mr. Kripke’가 기술구가 아니라 고유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그것은 고유명이 기술구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해 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실제로 필자는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 쏘즈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들의 사례로 제시한 표현들을 넘어서 훨씬 광범위한 사례들로 일반화될 수 있고, 그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이런 필자의 생각을 하나의 입론으로 확립하기 위해선 우선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한층 더 이론적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고, 다음 절에서 그러한 명료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에 대한 쏘즈 자

19) 여기서 ‘유사동의어’는 매우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특히 현실세계에서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 두 지시어(co-referring expressions)도 유사동의어의 관계에 있다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Kripke’와 ‘the author of *Naming and Necessity*’는 유사동의어이다.

신의 입장을 좀 더 고찰해 보기로 하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썬즈가 그의 책 『고정성을 넘어서』에서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들이 고유명이라고 논변할 때 그는 NC1, NC2, NC3만 언급하지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맥킨지의 비판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NC1, NC2, NC3에 대해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곧장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도입하고, 그를 통하여 ‘Trenton, New Jersey’나 (7a)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고유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썬즈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도입한다는 것은 썬즈가 결국 NC1, NC2, NC3가 다함께(jointly) 어떤 표현이 고유명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썬즈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필자는 그렇게 썬즈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그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본다. 실제로 우리는 위에서 NC1, NC2, NC3가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와 같은 반례들에 직면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일단 NC1, NC2, NC3가 어떤 표현이 고유명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할 때, 그들과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 사이의 관계가 궁급해진다. 사실 단순 고유명에 대한 직접 지시 이론을 가정할 때 NC1, NC2, NC3가 개별적으로(individually) 어떤 표현이 고유명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은 고유명에 대한 조건으로서 NC1, NC2, NC3을 보완하는 것인가? 썬즈(2005, p. 175)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답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름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들의 지시체를 포함하는데, 그 지시체는 대체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비기술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이름 n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시체 r 을 가지면 n 은 어떤 다른 상황에서 그와 다른 지시체 r^* 를 갖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깨닫자*, 이름은 문법적인 생성 원리의 산물이 아니라 구문론적 어휘 단위와 같이 기능한다. (필자의 강조)²⁰⁾

20)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emantic contents of members of this class [names] include their referents, these referents are determined largely or entirely

만약 썸즈의 입장에 대한 필자의 이런 해석이 올바른 것이라면, 적어도 고유명과 기술구의 구분에 대한 썸즈의 입장은 일관된 체계가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은 NC1, NC2, NC3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후자가 해당 표현의 의미나 지시에 관한 조건이라면 전자는 해당 표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한 조건이다. 그런 상황에서 애초 그의 책 『고정성을 넘어서』에서 고유명에 대한 조건으로서 NC1, NC2, NC3를 제시했다가, 맥킨지의 비판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고유명에 대한 조건으로서 NC1, NC2, NC3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임시방편적으로 보인다.

썸즈의 입장이 갖는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 고유명과 기술구의 구분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것이 갖는 이론적 잠재력을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 하에서 필자는 이하에서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한층 더 정확하게 서술하고 또 그것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IV.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한층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자가 NC1, NC2, NC3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반례들에 대하여 그것이 올바른 판정을 내리는지 살펴보자. 필자는 앞서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와 같은 표현들이 NC1, NC2, NC3을 모두 만족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고유명으로 간주될 수 없

nondescriptively, and whenever an expression in the class has a referent with respect to any circumstance, it never has a different referent with respect to any other circumstance. In addition, members of the class function syntactically like lexical items, rather than instances of productive grammatical constructions.’ (필자의 이탤릭)

다고 논변하였다. 그럼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은 어떤가? 3장 초입에서 제시한 문장 1과 2에서 문제의 표현들의 구성 요소들 중 일부를 그와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로 교체하여 얻을 수 있는 다음의 문장들을 고려해 보자.

- 9a. The youthful, soul-searching Obama visited his father’s hometown in Keyna.
- 9b. The young, introspective Obama visited his father’s hometown in Keyna.
- 9c. *The young, soul-searching US president visited his father’s hometown in Keyna.
- 9d.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젊은 정인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 9e. 학구열이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 9f.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청년 정인교 고려대 교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명백히 (9a)과 (9b)는 상용적인 영어 문장들이고 (1)과 동의문 혹은 혹은 유사동의문이다. 마찬가지로 (9d)와 (9e)는 역시 상용적인 한국어 문장들이면서, (2)와 동의문 혹은 유사동의문이다.

한편 (9c)나 (9f)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9c)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The US president, who was young and soul-searching, visited his father’s hometown in Kenya’로 읽는 것이다. 즉 현직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케냐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는 (1)이 뜻하는 바와 매우 다르다. 달리 말하자면, 만약 (1)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의도 하에서 누군가 (9c)를 작문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그의 문장이 (1)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용적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논점을 (9f)에 대해서도 옹호할 수 있다. (9f)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 문장이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고 젊은 고려대 교수가 있어서,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유학을 가는 시점에 정인교는 이미 고려대 교수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2)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9f)는 (2)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용적인 방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위에서 우리는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에 대하여 그 표현들의 구성 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 만족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oung’, ‘soul-searching’, ‘학문’, ‘열정’, ‘가득했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 만족되지 않지만, ‘Obama’나 ‘정인교’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 그런데, 앞서 필자는 문제의 표현들을 고유명이 아니라 기술구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식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고유명과 기술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NC4. 어떤 지시어(referring expression)가 있을 때, 그 표현을 구성하는 모든 유의미한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그 표현은 고유명이다.²¹⁾

이 기준에 따르면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은 비록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구성 요소도 포함하고 있기에 고유명이 되지 못한다. 즉, 그들은 기술구인 것이다.

필자가 썬즈의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설명하면서 제시했던 모든 사례에 대하여 NC4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경상북도’ 및 ‘상주시’ 모두에 대해서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하고 (*‘영남 북부 상주시’, *‘경상북도 삼백의 고장’²²⁾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C4는 그것이 고유명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 역시 ‘이순신’ 및 ‘장군’ 모두에 대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하고 (*‘충무공 장군’, * ‘이순신 고위 무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C4로부터 우리는 그것은 고유명이 아니라는 판정을 얻지 않는다.²³⁾ 한편, ‘정인교 교수’는 고유명과 기술구의 경계선에 놓인 표

21) NC4는 고유명에 대한 필요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지 충분조건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2) ‘삼백의 고장’은 상주시의 또 다른 이름이다.

23) 한국어에서 ‘이순신 장군’, ‘정인교 교수’와 같이 이름 뒤에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보

현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정인교 대학교원’은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상용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화자에 따라서는 ‘정인교 선생(님)’을 상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인교 교수’가 ‘교수’에 대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쏠즈는 이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그러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인교 교수’가 고유명인지 기술구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²⁴⁾

앞서 우리는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의 핵심은 어떤 표현이 상용적인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된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쏠즈가 다루지 않는 종류의 사례로 확장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까페라고 하기엔 쑥스럽지만(까페명)’과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적용해 보기로 하자.

(10a) 어제 까페라고 하기엔 쑥스럽지만에 갔어.

(10b) 어제 우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술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위의 문장들에서 ‘쑥스럽지만’과 ‘여자’를 각각 그에 대응하는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 ‘부끄럽지만’과 ‘여성’으로 교체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얻을 수 있다.

편적이지만 가끔 ‘장군 이순신’, ‘교수 정인교’와 같이 이름 앞에 타이틀을 붙여 지시어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정인교’와 마찬가지로 해당 표현들은 기술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령, 다음 두 문장은 모두 상용적 문장이고, 이는 ‘장군 이순신’이 기술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1) 조선의 장군 이순신은 명량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2) 조선의 고위무장 이순신은 명량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비슷한 주장을 ‘교수 정인교’에 대해서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 24) 이 지점에서 영어 표현 ‘Professor Kripke’와 한국어 표현 ‘정인교 교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Professor Kripke’는 그것의 모든 유의미한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인교 교수’와 달리 ‘Professor Kripke’는 NC4에 의하여 명확히 고유명으로 분류된다.

- (11a) *어제 카페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에 갔어.
 (11b) *어제 우리는 이화여성대학교에서 학술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때, ‘카페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과 ‘이화여자대학교’이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하고, 따라서 그들이 NC4에 의해서 고유명으로 올바르게 관정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11a)과 (11b)가 상용적이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데, 필자는 그렇게 말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카페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이라는 이름을 갖는 카페와 함께, ‘카페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이라는 이름을 갖는 카페가 존재하고,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이화여성대학교’라는 이름의 대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경우 (11a)와 (11b)가 상용적이지 않다고 말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단지 교체가 이루어지는 표현들(e.g. ‘여성’, ‘여자’)은 서로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함하는 지시어들(e.g. ‘이화여성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은 전혀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서 (10b)와 (11b)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즉, 동의문 혹은 유사동의문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썸즈의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고 또 정식화하고자 한다.

- ND1. 언어 L에서 지시어 E가 어떤 유의미한 구성요소로 e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이 때, E가 e에 대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다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의 모든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 e'에 대하여 그리고 E가 사용되는 L의 모든 외연적(extensional)²⁵⁾ 문장 S에 대하여 S의 e를 e'로 교체함으로써 얻어지는 문장 S'는 S의 상용적인 동의문이거나 혹은 상용적인 유사동의문이다.

이 ND1과 썸즈 자신의 제안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후자와 달리 전

25) 잘 알려져 있듯이 내포 문맥(intensional context)을 제공하는 문장, 예를 들어서 명제 태도 문장이나 혹은 양상 문장은 외연적 문장이 아니다. 필자가 이렇게 변항 ‘S’를 외연적 문장에 국한하는 이유는 외연적 문장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은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내포 문맥을 굳이 끌어들이 필요 없이 때문이다.

자에 따르면 S’가 언어 L에서 상용적인 문장일지라도 그것이 S의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가 아니면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는 ‘까페라고 하기엔 썩스럽지만’과 ‘이화여자대학교’이 고유명이라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ND1에 비추어 NC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

ND2. 언어 L에서 지시어 E는, 그 표현의 모든 유의미한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고유명이다.²⁶⁾

ND1과 ND2는 앞서 필자가 고려하였던 모든 사례에 대하여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는 판정을 내린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까페라고 하기엔 썩스럽지만’과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S와 S’는 동의문 혹은 유사동의문이 아니고, 이에 따라 ND1과 ND2는 그 표현들이 고유명이라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정을 내린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는 ‘young’이나 ‘soul-searching’에 대해서는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나 ‘Obama’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족하고, ND2에 의하면 이는 ‘The young, soul-searching Obama’가 고유명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경상북도 상주시’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두 표현들을 구성하는 모든 유의미한 성분에 대하여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 만족되고 이에 따라 ND2는 그들이 고유명이라는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정을 내린다.²⁷⁾

26) NC4와 마찬가지로 ND2 역시 고유명에 대한 필요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필자 자신은 그것이 고유명에 대한 충분조건 역시 제시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증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고유명에 대한 필요조건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ND2를 형식화하고자 한다.

27) 각주 18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어떤 표현의 상용성은 발화자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발화자나 맥락을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용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누군가 한국어 표현의 상용성에 대한 판단을 필자와 달리하고, 그 결과로 ND1과 ND2에 의해 어떤 표현이 고유명으로 판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필자와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화자의 개인 언어(idiolect)에 따라서 어떤 표현이 고유명인지 여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썬즈가 단순 고유명에 관한 직접 지시 이론을 그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이라고 부른 표현들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가지 난제, 즉 어떤 근거에서 그 표현들이 기술구가 아니라 고유명이라는 질문에 대한 썬즈 자신의 답변을 소개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썬즈 자신의 답변은 그리 체계적이지 못했다. 『고정성을 넘어서』에서 최초로 그 질문을 논의할 때 그는 NC1, NC2, 그리고 NC3에 근거하여 자신이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이름이라고 부른 표현들이 고유명이라는 입장을 옹호했다가, 이후 맥킨지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그와 전혀 다른 성격의 근거에서, 즉 필자가 구문론적 단순체 기준이라고 부른 것에 근거하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본 논문에서 NC1, NC2, 그리고 NC3가 그 자체로 어떤 표현이 고유명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구문론적 단순체 기준을 ND1과 ND2로 일반화하고 정식화할 때 그것은 썬즈 자신이 고려하는 사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들에서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 글을 마치기 전에, ND1과 ND2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정당성의 원천을 아주 개략적으로나마 탐색해 보기로 하자. 현재 이름에 대한 주류 이론으로 간주되는 직접 지시 이론의 지지자들이 이름에 대하여 갖는 직관은 이름이 마커스(Ruth Barcan Marcus 1961; 1962)가 말한 일종의 ‘꼬리표(tag)’라는 것이다. 이런 꼬리표 기능은 그것의 지시체를 다른 대상들로부터 구분해 내는 것이다. 음성언어에서는 이름과 연관된 소리 자체의 음성적 특성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언어에서는 이름과 연관된 문자 자체의 형태적 특성을 통해서 이런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구분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꼬리표는 어떤 기술적 의미도 가질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직접 지시 이론가들은 이름이 그 지시체에 대해서 참되게 성립하는 어떤 기술구와도 의미론적으로 동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름이 꼬리표로 기능하기 위하여 기술적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지

만 그것은 어떤 주어진 맥락 하에서 (음성 언어의 경우) 다른 소리와 구별하여 인식될 수 있는 음성학적 특성을 그리고 (문자 언어의 경우) 다른 문자와 구별하여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론적 특성을 지녀야 하고, 그런 음성학적 혹은 형태론적 특성이 이름이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름이 꼬리표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전술한 이름의 음성학적 혹은 형태론적 특성들이다.

직접 지시 이론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전자가 후자에 대한 일종의 꼬리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꼬리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구성요소들, 즉 ‘이화’, ‘여자’, ‘대학교’와 같은 표현의 의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꼬리표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른 음성이나 문자와 구분해 줄 수 있는 그것의 음성적 혹은 형태적 특성들뿐이다. 이처럼 그 구성요소들의 의미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꼬리표로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역할에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않기에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여자’를 그것의 동의어 혹은 유사동의어인 ‘여성’으로 교체하여 얻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 ‘이화여성대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시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자’라는 단어의 음성적 혹은 문자적 특성 덕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자’가 ‘여성’과 음성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화여자대학교’가 고유명으로 기능하는 이상, 그것의 유의미한 구성 요소들 중 일부를 음성적으로 혹은 형태적으로 상이한 표현으로 교체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기존에 수행하던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고유명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 설사 기존의 구성 요소와 그것을 교체하는 새로운 표현이 동의어나 혹은 유사동의어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관찰을 일반화한 것이 다름 아니라 ND1과 ND2이다. 이는 ND1과 ND2가 이름이 꼬리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직접 지시 이론의 저변에 놓인 직관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⁸⁾ 물론 필자의 이러한 관찰을 고유명에 대한 구분 기준으로서 ND1과

ND2가 갖는 정당성에 대한 엄밀한 논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세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의 관찰은 ND1과 ND2가 고유명을 판별해내는 기준으로서 꽤 유망한 제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손색이 없다.

투 고 일: 2016. 10. 12
심사완료일: 2016. 11. 07
게재확정일: 2016. 11. 08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
- 28) 솜즈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의미를 갖는 이름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그가 ND1과 ND2에 대한 필자의 정당화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ND1과 ND2가 솜즈의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을 자연스럽게 일반화하고 정식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필자의 정당화를 솜즈가 거부할 경우 그의 구문론적 단순체 조건이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의미를 갖는 이름이 존재한다는 그의 입장과 상호 모순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주제는 이름에 관한 솜즈의 견해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고 이에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재연, 2008. 「고유명의 변별적 속성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27: 103-126.
- _____, 2012. 「고유명 의미의 지시와 내포」 『한국어의미학』 37: 183-211.
- 이홍식, 2016. 「고유 명사의 의미와 지시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0: 307-44.
- Andersen, J., 2007. *The Grammar of Na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umming, S., ‘Name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6 Edition), Edward N. Zalta (ed.), forthcoming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6/entries/names/>>.
- Devitt, M. & Sterelny, K., 1988. *Language and Reality: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 Donnellan, K. S.,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281-304.
- Kripke, S., 1980. *Naming and Necess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cus, R. B., 1961. ‘Modalities and intentional languages.’ *Synthese* 13: 303-322.
- _____, 1962. (with W.V. Quine, Saul Kripke, J. McCarty and Dagfinn Føllesdal) “Discussion on the Paper of Ruth Barcan Marcus ‘Modalities and intensional languages’.” *Synthese* 14:132-143.
- McKinsey, S., 2005. ‘Critical Notice of Scott Soames’s *Beyond Rigidit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5: 149-68.
- Soames, S., 2002. *Beyond Rigidity: The Unfinished Semantic Agenda of Naming and Neces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3, *Philosophical Analysis in the Twentieth Century, Volume 2: The Age of Mea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5. 'Beyond Rigidity: Reply to McKinse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5: 169-78.

Neale, S., 1990. *Descriptions*. Cambridge, MA: MIT Press.

ABSTRACT

Is “Admiral Soonsin Yi” a name or description?

Choi, Sung-Ho

This paper will examine Scott Soames’s thesis advanced in his *Beyond Rigidity*, that what he calls ‘partially descriptive names’ (e.g. ‘Professor Kripke’, ‘Princeton University’, ‘Trenton, New Jersey’) are names. His justification for this thesis appears to lack a high level of coherence we typically expect from his work. But I do believe that his latest justification for it, when properly interpreted and formulated, is revealing of a hitherto unnoticed character of names. What is more, Soames’s thesis can be naturally extended to cover names that don’t fall under the title of partially descriptive names, or so I will argue. This will shine new light on the difficult question of how to mark names off from other meaningful expressions in languages.

Subject Class: Analytic philosophy, Philosophy of language

Keywords: Scott Soames, Names, Partially Descriptive Names, Descriptive Meaning, Syntactically Simple